신한탄탄든든유니버설종신보험(무배당)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신한탄탄든든유니버설종신보험(무배당)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1. 상품의 특이사항

Q: 『신한탄탄든든유니버설종신보험(무배당)』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 신한탄탄든든유니버설종신보험(무배당)은 사망보장 중심의 금리확정형 유니버설종신보험으로 보험료의 유연한 납입기능 및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기능으로 고객 편의성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보장설계가 가능합니다.
- **>>>>** 신한탄탄든든유니버설종신보험(무배당)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이율은 연복리 2.00% 입니다.

Q: "체증나이 전 보험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체증형에 한함)

A:

"체증나이 전 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 체증나이(55세 또는 6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로 하며, "체증나이 후 보험기간"은 「체증나이(55세 또는 60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로 합니다.

Q: "유연한 납입기능』이란 무엇인가요?

A:

- 계약자는 월납 계약의 경우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부터는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해당 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TH,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미납에 따른 해지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월대체보험료 차감으로 인하여 해약 환급금이 감소하며, 보험료 장기간 미납시 월대체보험료 차감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O: "월대체보험료」라 무엇인가요?

A:

일시남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 중 가입금액 대비 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대체보험료는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하며,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기본보험료 대비 유지관련비용, 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공제합니다.

월납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를 말하며, 월대체보험료는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며, 계약체결비 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공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월대체보험료는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하며, 계약관리비용 (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공제합니다. 다만,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다음 ①~@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월대체보험료를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 해당 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누계액 이상을 납입한 경우
 -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잔액이 없는 경우
 - ⑤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
 - ◎ 계약자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 충당이 가능한 경우
- ※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 공제합니다.

○: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매월 월대체보험료를 주계약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하므로 2년 (24회 납입)간 기본보험료를 의무납입한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나(월납에 한함),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감소하여 계약이 조기에 해지 될 수 있습니다.

Q: 『보험료 추가납입』은 가능한가요?

A:

- 추가납입보험료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누계액이 기본보험료가 해당 월까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합니다.
- 》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다음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에 합산합니다.
 - 월납 계약의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총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12×보험료 납입기간)의 100%로 하고,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12)의 100%로 합니다.
 - 일시납 계약의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총 한도는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0%로 하고,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로 합니다.

Q: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가능한가요?

A:

-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납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였을 경우에만 추가 계약자적립액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인출시점까지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실제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회당 인출가능금액은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월납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은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 이상 이 되어야 합니다.
 - ※ 일시납 계약의 경우
 -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은 기본보험료의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추가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월납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는 추가 계약자적립액 내에서만 인출 가능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인출이후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적립액 인출에 따른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Q: "보험료 납입면제』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

A:

지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며,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합니다.

Q: "보험료 할인,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

월납계약의 경우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4,000만원 이상의 고액계약에 대해서는 주계약 기본보험료에 대하여 3% 할인을 적용합니다.(다만, 보험가입금액 3,88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은 가입불가)

단체취급 보험료 할인

월납계약의 경우 동일 단체에서 5인이상 가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향후 보험료 납입시 제2회 이후 영업보험료의 1.5% 할인을 적용합니다.(다만, 보험료 할인은 총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의 범위 내에서 가능함)

Q: "장애인가족우대특약」이란 어떤 특약인가요?

A:

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에 규정한 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로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자일 경우 주계약 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제외)의 5%를 할인합니다.(다만, 제2회 이후의 보험료에 대하여 할인신청 접수 이후부터 적용)

Q: "New연금전환특약(무배당)」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연금계약으로 전환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연금전환 시점에 회사에서 적용하는 연금전환특약을 통하여 계약을 전환해 드립니다. 연금전환 시점의 연금전환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최초에 이 보험계약을 계약하는 시점의 연금전환특약과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와 산출기초율[연금사망률, 계약관리비용, 전환당시 산출기준에 따른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 또는 "확정연금형의 확정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 확정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은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가입자격요건

① 보험종류

구 분	명칭	보험 종목
주계약	신한탄탄든든유니버설종신보험(무배당)	평준형, 체증형

②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구 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신한탄탄든든유니버설	평준형	종신	일시납, 5년납/7년납/ 10년납/12년납/15년납/ 20년납/30년납, 55세납/60세납/65세납	만15세 〜 70세
종신보험(무배당)	체증형	종신 (체증나이 55세/60세)	일시납, 5년납/7년납/10년납/12년납/ 15년납/20년납/30년납, 55세납	만15세 - (체증나이-10)세

[※] 만나이가 아닌 나이는 보험나이를 말합니다. 보험나이에 대한 설명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보험료 납입주기: 일시납 및 월납

④ 가입한도

구 분		가 입 한 도
주계약	신한탄탄든든유니버설종신보험(무배당)	3,000만 ~ 30억

- 주) 당사 및 全보험권(생보+손보+공제) 기계약합산 담보별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가입이 차등 또는 제한될 수 있음
- ※ 다만, 주계약 한도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기존에 가입한 보험 가입내용 및 가입경로 등에 따라 주계약 가입한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건강진단 여부

신한탄탄든든유니버설종신보험(무배당)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 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

주 계 약		신한탄탄든든유니버설종신보험(무배당)	
특 약	+	표준하체인수특약	(제도성)
	+	New연금전환특약(무배당)	(제도성)
	+	신한단체취급보험료할인특약	(제도성)
	+	보험금 대리청구 지정서비스특약	(제도성)
	+	사후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제도성)
	+	선지급서비스특약	(제도성)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제도성)
	+	장애인가족우대특약	(제도성)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제도성)

2. 보험금 지급내용

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II마니하그	평준형	H허기가 주 피니허지기 기미당(여오 때	기보니하그애	
사망보험금	체증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기본보험금액	

-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2.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기본보험금액이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 101%」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준사망보험금」이란 각 종별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액 인출시 인출 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인출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큼 기준사망보험금에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평준형	보험가입금액				
	체증나이 전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체증형	체증나이 후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을 「체증나이 연계약해당일」부터 경과기간(최대20년)			
	제중되어 후 로랍기산	동안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액			

4.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세부내용은 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3.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기본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기본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사기에 의한 계약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다만,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 1.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 3. 1.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실제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다만, "인출 및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실제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다만, "인출 및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 조 제2호(<별첨1>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별첨1> 참조)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2.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사항

1.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불이익사항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직업, 운전, 현재와 과거의 건강상태, 신체장해 등)은 피보험 자가 직접 사실대로 작성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Pi\Pi$ 보험료 산출기초

1.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

〇: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 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신한탄탄든든유니버설종신보험(무배당)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연복리 2.00%입니다.

2.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위험률

O: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남자			여자		
TE	20세	40세	60세	20세	40세	60세
무배당 예정 경험 사망률	0.000278	0.000708	0.003703	0.000176	0.000491	0.001660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를 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탄탄든든유니버설 종신보험(무배당)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V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 기준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우리 신한라이프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 평준영 < 기준 : 주계약 1억원, 40세, 20년납, 월납, 단위 : 원 >

<남 자>

경과기간	비	납입보험료누계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40세	865,725	-	0.0
6개월	40세	1,731,450	-	0.0
9개월	40세	2,597,175	-	0.0
1년	41세	3,462,900	-	0.0
2년	42세	6,925,800	2,736,133	39.5
3년	43세	10,388,700	5,915,498	56.9
4년	44세	13,851,600	9,144,222	66.0
5년	45세	17,314,500	12,422,528	71.7
6년	46세	20,777,400	15,751,277	75.8
7년	47세	24,240,300	19,131,576	78.9
8년	48세	27,703,200	22,068,069	79.6
9년	49세	31,166,100	25,057,236	80.3
10년	50세	34,629,000	28,100,120	81.1
15년	55세	51,943,500	44,170,230	85.0
20년	60세	69,258,000	61,811,396	89.2
25년	65세	69,258,000	66,615,853	96.1
30년	70세	69,258,000	71,578,589	103.3
35년	75세	69,258,000	76,573,917	110.5
40년	80세	69,258,000	81,271,550	117.3
45년	85세	69,258,000	85,569,807	123.5
50년	90세	69,258,000	89,511,846	129.2
55년	95세	69,258,000	93,464,881	134.9
60년	100세	69,258,000	99,213,201	143.2

[※]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실제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및 추가납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납입보험료는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이 반영된 실납입보험료를 말하며, 해약환급금은 할인되기 전 보험 료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여 자>

경과기간	나이	납입보험료누계	해약환급금	환 급률 (%)
3개월	40세	808,980	-	0.0
6개월	40세	1,617,960	-	0.0
9개월	40세	2,426,940	-	0.0
1년	41세	3,235,920	-	0.0
2년	42세	6,471,840	2,540,827	39.2
3년	43세	9,707,760	5,522,188	56.8
4년	44세	12,943,680	8,552,215	66.0
5년	45세	16,179,600	11,631,526	71.8
6년	46세	19,415,520	14,760,979	76.0
7년	47세	22,651,440	17,941,814	79.2
8년	48세	25,887,360	20,706,907	79.9
9년	49세	29,123,280	23,525,473	80.7
10년	50세	32,359,200	26,398,713	81.5
15년	55세	48,538,800	41,626,947	85.7
20년	60세	64,718,400	58,410,160	90.2
25년	65세	64,718,400	63,299,925	97.8
30년	70세	64,718,400	68,533,102	105.8
35년	75세	64,718,400	74,008,702	114.3
40년	80세	64,718,400	79,466,157	122.7
45년	85세	64,718,400	84,552,893	130.6
50년	90세	64,718,400	88,981,644	137.4
55년	95세	64,718,400	92,772,815	143.3
60년	100세	64,718,400	97,632,591	150.8

[※]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실제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및 추가납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 해약한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납입보험료는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이 반영된 실납입보험료를 말하며, 해약환급금은 할인되기 전 보험 료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체증형 < 기준 : 주계약 1억원, 60세형, 남자 28세 / 여자 30세, 20년납, 월납, 단위 : 원 >

<남 자>

경과기간	나이	납입보험료누계	해약환급금	환 급률(%)
3개월	28세	1,211,724	-	0.00
6개월	28세	2,423,448	-	0.00
9개월	28세	3,635,172	-	0.00
1년	29세	4,846,896	-	0.00
2년	30세	9,693,792	4,360,776	44.9
3년	31세	14,540,688	8,947,222	61.5
4년	32세	19,387,584	13,612,207	70.2
5년	33세	24,234,480	18,357,414	75.7
6년	34세	29,081,376	23,184,576	79.7
7년	35세	33,928,272	28,095,474	82.8
8년	36세	38,775,168	32,437,266	83.6
9년	37세	43,622,064	36,866,591	84.5
10년	38세	48,468,960	41,385,396	85.3
15년	43세	72,703,440	65,392,916	89.9
20년	48세	96,937,920	91,949,347	94.8
25년	53세	96,937,920	100,699,530	103.8
30년	58세	96,937,920	110,379,034	113.8
35년	63세	96,937,920	121,057,548	124.8
40년	68세	96,937,920	132,733,642	136.9
45년	73세	96,937,920	144,899,933	149.4
50년	78세	96,937,920	156,403,824	161.3
55년	83세	96,937,920	165,618,054	170.8
60년	88세	96,937,920	173,705,611	179.1
65년	93세	96,937,920	180,853,668	186.5
70년	98세	96,937,920	187,989,018	193.9
72년	100세	96,937,920	191,509,229	197.5

[※]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실제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및 추가납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납입보험료는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이 반영된 실납입보험료를 말하며, 해약환급금은 할인되기 전 보험 료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여 자>

경과기간	나이	납입보험료누계	해약환급금	환 급률 (%)
3개월	30세	1,210,269	-	0.0
6개월	30세	2,420,538	-	0.0
9개월	30세	3,630,807	-	0.0
1년	31세	4,841,076	-	0.0
2년	32세	9,682,152	4,389,116	45.3
3년	33세	14,523,228	8,985,773	61.8
4년	34세	19,364,304	13,660,465	70.5
5년	35세	24,205,380	18,414,550	76.0
6년	36세	29,046,456	23,249,563	0.08
7년	37세	33,887,532	28,167,648	83.1
8년	38세	38,728,608	32,517,610	83.9
9년	39세	43,569,684	36,955,216	84.8
10년	40세	48,410,760	41,482,797	85.6
15년	45세	72,616,140	65,536,929	90.2
20년	50세	96,821,520	92,141,015	95.1
25년	55세	96,821,520	100,923,531	104.2
30년	60세	96,821,520	110,631,697	114.2
35년	65세	96,821,520	121,335,772	125.3
40년	70세	96,821,520	132,951,734	137.3
45년	75세	96,821,520	145,190,245	149.9
50년	80세	96,821,520	157,005,347	162.1
55년	85세	96,821,520	167,532,781	173.0
60년	90세	96,821,520	176,617,193	182.4
65년	95세	96,821,520	184,146,686	190.1
70년	100세	96,821,520	193,116,160	199.4

[※]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실제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및 추가납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납입보험료는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이 반영된 실납입보험료를 말하며, 해약환급금은 할인되기 전 보험료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VI 보험가격지수

Q: 보험가격지수란?

A: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 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기준: 40세 (체증형의 경우 남자: 28세, 여자: 30세)]

사프면	H하기가	LFOIZIZE	보험가	⊐roi⊐oн(⊔roi)	
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남자	여자	가입금액(만원)
신한탄탄든든유니버설종신보험(무배당)_평준형	종신	20년	129.1%	135.2%	10,000
신한탄탄든든유니버설종신보험(무배당)_체증형	종신(60세형)	20년	136.8%	138.7%	10,000